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73
----------	-------

발의연월일 : 2025. 9. 10.

발 의 자 : 이용우 · 조계원 · 이수진

박 정 · 김남근 · 장철민

서영석 · 이주희 · 김태선

김남희 · 정혜경 · 이학영

박홍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의 상당수가 하청노동자에게 일어나고 있어 간접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확보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이에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발주자와 선박의 제조 및 수리를 최초로 도급한 수급인에 한해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건설발주자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받은 원청(종합건설사 등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 공사를 맡은 수급인(전문건설사 등)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안전 장비 구입 등 비용 지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원청에 해당하는 건설도급인까지 확대하고 하도급 계약시에 이를 계상하도록 하며, 또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도급계

약까지 확대하여 원청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등).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을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로,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를 “총괄·관리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건설공사도급인 또는”을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도급인과 제1항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수급인”을 “수급인 및 제5항의 도급인으로부터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한다.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도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75조제4항제3호 중 “제3항·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을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u>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u>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u>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u> ----- ----- ----- <u>총괄·관리하는 자</u> ----- -----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도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u>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u>	⑥ <u>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도</u>

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제3항·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

급인과 제1항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수급인 및 제5항
의 도급인으로부터 최초로 사
업을 도급받은 수급인-----

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_____

1. · 2. (현행과 같음)

[illegible]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	-----
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